



#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규정서

박람회 사무국 TEL. 02-785-5801 / FAX. 02-784-5801 / E-mail. info@uriexpo.kr

Add.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 덕성빌딩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추진위원회 사무국

##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및 참가규정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박람회'라 함은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말한다.
3. '주최자'이라 함은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말한다.

##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최측으로부터 청구서를 발급받은 후 참가비(총 부스 사용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업체의 참가신청서 접수 및 부스비 납입 순, 국적, 전시품 성격, 참가신청면적, 부대시설이용 등을 고려하여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박람회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4조】 전시실 관리 및 의무사항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만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표기하지 않거나 주최자가 허용하지 않은 구역에서 전시품 판매행위를 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사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시설물의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최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5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주최자 측에서 발행한 청구서를 받은 후 7일 이내(1주일) 납입하고 입금확인증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참가신청서가 접수된다.
2. 계약금은 청구서 발행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2019년 3월 15일(금)까지 완납해야 한다.
3. 전시자는 참가비를 주최자 측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완납해야 하며, 사전 공지 없이 기한을 넘길 시 주최자는 전시자를 부스배정에서 임의로 배제하고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 해약 및 사용면적 축소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전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전시자는 반드시 전시개시 30일(2019년 3월 18일)이전에 주최사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납부된 참가신청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3월 18일(월) 이후로는, 박람회 참가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전시자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참가를 포기해야 할 경우 전시자는 박람회 신청부스 참가비중 50%를 주최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20일 이내 취소 시에는 100%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 별도)

## 【제7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시킬 경우 주최자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정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시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가 책임진다.

## 【제9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져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 보충규칙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최자 및 인천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 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019년 3월 15일

업체명 :

대표자 :

(인)